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야구장 및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 종합체육시설의 상호 연계성을 극대화한 종합스포츠타운 인프라 구축으로 구미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며,

○ 구미중앙시장 주차장을 설치하여

유통산업의 개방, 쇼핑문화의 변화 등으로 상권이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는 전통시장을 소비자가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 산림에코센터를 신축하여

시민들에게 산림 생태 전시·체험관, 생태영상관 등의 체험공간 및 생태 탐방로를 제공하는 등 산림 휴양시설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취득재산]

○ 토 지

- 규 모 : 71,024m²(광평동 221번지의 87필지)
- 기준가격 : 21,183,373천원(가 감정가 기준)

○ 건 물 (신 축)

- 연 면 적 : 3,815m²
- 기준가격 : 8,200,000천원(공사금액 기준)

□ 야구장 및 복합체육시설 조성 부지매입

○ 토 지

- 위 치 : 구미시 광평동 221번지외 68필지
- 면 적 : 69,475m²
- 기준가격 : 18,571,140천원(가 감정가 기준)

□ 구미중앙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 토 지

- 위 치 : 구미시 원평동 112-1번지외 18필지
- 면 적 : 1,549m²정도
- 기준가격 : 2,612,233천원(가 감정가 기준)

□ 산림에코센터 신축

○ 건 물 (신축)

- 위 치 :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5-1번지 일원
- 연 면 적 : 3,815m²(1동)
- 예정가격 : 8,200,000천원(공사금액 기준)

※ 토지취득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2012. 5. 21)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4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5.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신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첫 번째 안건인 야구장 및 복합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광평동 211번지의 68필지(면적 69,475㎡)를 185억원(가 감정가)으로 매입하는 건이며,
- 두 번째는 구미중앙시장 주차장 부지 원평동 112-1번지의 18필지(면적 1,549㎡)를 26억원(가 감정가)으로 매입하는 건이며
- 세 번째는 산림에코센터 건물을 산동면 인덕리 산5-1번지 일원(면적 3,815㎡)에 82억원(공사금액 기준)으로 신축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야구장 및 복합체육시설 조성 부지 매입건으로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공설운동장 주변 부지로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은 양호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구미중앙시장옆 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며,

- 산림에코센터 건물 신축 건은 정부의 3대 문화권 생태관광 기반 사업의 구미시 낙동강역사너울길 조성사업의 일부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태 체험과 더불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생태 교육관의 기능과 재충전을 위한 시민 쉼터로서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나,
-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